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지안자산운용(주)

지안자산운용(주)(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제44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따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을 지정하였습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함.
 - 다만, 회사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류 할 수 있음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 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약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동법 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투자일임)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단, 회사의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기타 회사가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고유재산 운용업무: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 운용 업무: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1.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법 제85조, 법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등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구분

- 대응방안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승인, 사후보고 등을 통해 점검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를 제한한다.

이해상충 유형	대응방안 예시
---------	---------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에서 먼저 매매 또는 제3자에게 매매권유	선행매매 금지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거래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 허용될 수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특정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기준 준수
임직원의 대외활동	사전승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사전승인, 사후보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개인매매	사전승인, 사후보고
집합투자(투자일임)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 경과한 정보의 제공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고객이익의 우선

2.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VI.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